

#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32호 2021. 6. 24.(목)

##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407호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1

## 고 시

- 사천시 고시 제176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 12
- 사천시 고시 제177호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 14

##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828호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 30
- 사천시 공고 제830호 노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열람공고 ----- 31

## 입법예고

- 사천시 공고 제818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36

회 람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사천시 훈령 제407호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6월 24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10명”을 “11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이”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로, “체육업무담당부서장”을 “체육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팀장”을 “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구단운영”을 “여자농구단 운영”으로 한다.

제3조제6항 중 “농구단운영”을 “여자농구단 운영”으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단장”을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단장”으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제4조의2(재직 및 경력증명 발급) 시장은 단원 및 퇴직한 단원으로부터 재직 또는 경력증명서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준용하고”를 “준용하고, 감독은”으로, “감독”을 “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천시청여자농구단장”을 “단장”으로 한다.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인사위원회) ①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체육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하며, 위원은 체육업무담당 부서장, 사천시체육회 추천자 1명, 체육 관련 분야 전문가 2명 이내로 한다.

③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의 임용에 관한 사항
2. 단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위원회 위원은 그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체육 업무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⑦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서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5조의3(선수의 인권보호) ① 단장은 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확인을 하여야 한다.

② 여자농구단 지도자 및 선수는 윤리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성폭력, 폭력 예방 등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③ 누구든지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체육업무 담당 부서 또는 감사 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

④ 단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선수의 인권침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인권침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2.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를 보호하기 위한 근무지 분리,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

⑤ 단장은 제4항제1호에 따른 조사결과 인권침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해자에 대한 근무지 변경, 징계,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부서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단장은 인권침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 및 인권침해를 받은 선수에 대해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의 제목 “(훈련)”을 “(훈련 및 합숙소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경기력”을 “시장은 경기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장은 선수들의 편의와 훈련의 성과를 높이기”를 “시장은 원거리 선수의 편의 제공 및 선수의 복리후생 향상 등을”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합숙소의 입소는 선수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입단 계약시 합숙소 “입소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합숙소를 1인 1실(또는 2인 1실) 형태 등 국토교통부 최저 주거 기준에 부합하도록 운영 한다.

⑤ 합숙소에 입소한 선수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단장은 선수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안을 넘겨야 한다.

1. 합숙소의 건물 용도 및 구조를 변경하는 행위
2. 합숙소의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주, 추태, 소란, 방가 등 선수단으로써 품위를 해치는 행위
4. 성희롱, (성)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 행위
5. 합숙소 내 선수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는 행위
6. 사적 용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 7. 집단 따돌림 행위

⑥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입소를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여자농구단 선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2. 본인이 퇴소 의사를 표시할 때
3. 제6조제5항에 따른 입소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4. 그 밖에 합숙소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⑦ 시장은 선수단의 훈련 및 대회 참가 시 이동에 필요한 전용 차량을 지원한다.

⑧ 시장은 숙소 및 차량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제3항 중 “지도자”를 “시장은 지도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단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선수”를 “시장은 선수”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여자농구단”을 각각 “시장은 여자농구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단장”을 “시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여자농구단”을 “시장은 여자농구단”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단장”을 “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우수선수 유치비는”을 “시장은 우수선수 유치비를”로, “유치비는 3년”을 “유치비를 3년”으로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운영에 관한 그 밖의 사항)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여자농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단장이 정한다.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의 훈련일지의 결재란 중 “담당자”를 “감독”으로 하고, “주무”를 “팀장”으로 하며, “감독”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결재란 중 “주무”를 “팀장”으로 하고, “감독”을 “과장”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6.24.>

## 입단계약서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입단(지도자·선수)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사용자(사천시청)를 “갑” 지도자(선수)를 “을” 이라 칭하며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상대자) 계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갑) 주 소 :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을) 주 소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년○○월○○일부터 ○○○○년○○월○○일까지로 한다.

제3조(계약조건) ① 보수는 연간 원정(W )으로 한다.

② “갑”은 “을”에게 연봉을 월로 나눈 금액을 월별 정액 지급한다.

③ 보수의 지급방법은 연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을”의 은행계좌에 온라인으로 지급한다.

제4조(소속) “을”의 소속은 사천시청여자농구단으로 한다.

제5조(복무) ① 공무원복무규정에 준하되, 훈련계획에 따라 조정가능하다.

②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외에도 훈련 및 출전에 임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갑”이 정한 「사천시청여자농구단운영규정」에 따른다.

제6조(퇴직금) 사천시청여자농구단에 1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하는 사람에게는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운영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제7조(계약의 해지) “갑”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한 자
2. 선수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 시킨 자
3. 각종 경기 성적이 극히 저조하여 그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자
5.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자
6. 그 밖에 해지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

제8조(기타계약의 조건)

1. "계약상대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임무수행에 있어 "계약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더라도 "계약자"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계약상대자"는 부단한 노력과 훈련으로 사천시의 명예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4. “계약대상자”의 경기실적은 전국체전까지의 경기성적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해석) 본 계약서에 있어 해석상의 의문이 있을 때에는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운영규정」과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계약서의 작성 보관)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사천시청 여자농구단장

사천시장 (인)

"을" 주 소 :

생년월일 :

성명 : (인)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별지 제6호서식] <신설 2021.6.24.>

## 재 직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
		한 자	( )		
	주 소				
재직사항	소 속				
	직급/직위				
	재직기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현재
용 도					

※ 본 증명서는 발급된 용도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재직을 확인합니다.

확 인	20 년 월 일
	직 : 성명 : (인)

20 . . .

사 천 시 장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21.6.24.>

## 경 력 증 명 서

인적사항	성 명	한 글		생년월일	-
		한 자	( )		
	주 소				
경력사항	소 속				
	직급/직위				
	경력기간	20 년 월 일 부터			
		20 년 월 일 까지			
용 도					

※ 본 증명서는 발급된 용도 외에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경력을 확인합니다.

확 인	20 년 월 일
	직 : 성명 : (인)

20 . . .

사 천 시 장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별지 제8호서식] <신설 2021.6.24.>

## 합숙소 입(퇴)소 신청서

본인은 사천시청여자농구단 소속 선수의 후생복리를 증진하고자 운영하는 합숙소에(서) 아래 일자로 입소(퇴소)하고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퇴)소 희망일 :       년       월       일

                          년       월       일

신청인

(인 또는 서명)

사천시장 귀하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사천시 고시 제2021-176호

##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고시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254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1. 6. 24 .

사 천 시 장

### 1. 세입·세출결산

(단위 : 원)

회 계 별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이 월 액	보 조 금 반 납 금	순 세 계 잉 여 금	
합 계	963,445,495,017	773,764,888,303	189,680,606,714	121,042,753,451	6,883,663,841	61,754,189,422	
일 반 회 계	871,581,134,614	717,620,087,359	153,961,047,255	110,980,047,291	6,788,481,646	36,192,518,318	
특 별 회 계	91,864,360,403	56,144,800,944	35,719,559,459	10,062,706,160	95,182,195	25,561,671,104	
공 기 업	소 계	46,230,981,303	36,670,488,704	9,560,492,599	4,384,374,610	5,176,117,989	
	상수도 사업	27,194,878,474	24,828,005,170	2,366,873,304	1,560,306,790	806,566,514	
	하수도 사업	19,036,102,829	11,842,483,534	7,193,619,295	2,824,067,820	4,369,551,475	
기 타 특 별 회 계	소 계	45,633,379,100	19,474,312,240	26,159,066,860	5,678,331,550	20,385,553,115	
	발 전 소 주 변 지 역 지 원 사 업	9,575,894,617	3,957,105,180	5,618,789,437	4,654,300,170	55,727,140	908,762,127
	의 료 급 여 기 금	2,597,514,742	2,423,021,070	174,493,672			174,493,672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자생 활 안 정 자 금	339,660,193	4,590,000	335,070,193			335,070,193
	수 질 개 선 사 업	1,413,137,209	842,301,430	570,835,779	531,874,000	34,881,300	4,080,479
	사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4,443,949,393	542,254,710	3,901,694,683			3,901,694,683
	장 기 미 집 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239,617,480		239,617,480			239,617,480
	도 시 개 발	1,611,880,834	152,279,000	1,459,601,834	26,971,000		1,432,630,834
	지 하 수 관 리	319,468,726	77,147,080	242,321,646			242,321,646
	종포일반산업단지	847,627,400	128,908,770	718,718,630	316,065,410		402,653,220
	농 공 단 지 사 업	13,855,422,922	10,358,540,160	3,496,882,762	149,120,970	4,573,755	3,343,188,037
	중 소 기 업 육 성 기	3,065,870,024	260,964,840	2,804,905,184			2,804,905,184
	농 어 업 발 전 자	7,323,335,560	727,200,000	6,596,135,560			6,596,135,560

# 사 천 시 공 보

제 732 호

## 2. 기금결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자활기금외 6종	5,485,048,436	△165,788,679	5,319,259,757

## 3. 채권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발전소주변 외 4종	6,724,618,977	△368,792,200	6,355,826,777

## 4. 채무결산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계	23,700,000,000	6,300,000,000	30,000,000,000
일반회계	400,000,000	7,300,000,000	7,700,000,000
특별회계	23,300,000,000	△1,000,000,000	22,300,000,000

## 5. 공유재산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공유재산	1,444,042,970,655	203,323,445,832	1,647,366,416,487

## 6. 물품 현재액

(단위 : 원)

구 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미니버스 외	12,069,258,000	△1,022,100,090	13,091,358,090

## 7. 재무제표

(단위 : 원)

재 정 상 태 표			재 정 운 영 표		
총 자산	총 부 채	순 자산	총 비 용	총 수 익	재정운영결과
3,154,207,450,422	68,319,870,620	3,085,887,579,802	720,226,351,929	604,421,213,236	△115,805,138,693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사천시 고시 제2021-177호

##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

사천시 고시 제2020-413호(2020. 12. 17.)로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고시된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변경) 승인 및 고시합니다.

2021. 6. 24.

## 사 천 시 장

### 1. 산업단지 명칭(변경없음)

- 향촌2 일반산업단지

###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 및 필요성(변경없음)

- 가. 사천시 관내 해안주변에 산재되어있는 소형 수리조선소 등으로 인하여 도시주거 환경 저해 및 기름 유출로 인하여 해양환경이 파괴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들 소규모 영세 수리조선소 등을 한 장소로 집단화하여 경쟁력 제고
- 나. 지역경제 활성화, 해양환경 보존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 및 향후 사천 바다케이블카 운행 시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함과 동시에 한려수도 해상국립공원 주변 해양환경 보존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함.

### 3. 지정 대상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 가. 위 치: 경상남도 사천시 사등동 산34번지 앞 공유수면 일원
- 나. 면 적: 68,661㎡(산업단지 62,153㎡, 진입도로 6,508㎡)

###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 방법(변경)

- 가. 개발기간(변경)
  - 당초 2016.07.28. ~ 2021.06.30.
    - 산업단지 2016.07.28. ~ 2021.06.30., 진입도로 2017.08.31. ~ 2021.06.30.
  - 변경 2016.07.28. ~ 2021.12.30.
    - 산업단지 2016.07.28. ~ 2021.12.31., 진입도로 2017.08.31. ~ 2021. 12.31.
- 나. 개발방법(변경없음): 공영개발
- 다. 변경사유: 잔여부대공종 시행 및 준공인가 절차 이행으로 인한 기간 연장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 5.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유치업종: 기타 기계 및 장비(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C31)
- ※ 폐수 발생시설 제외

## 6. 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변경없음)

- 가. 주 소: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 나. 사업시행자: 사천시장

##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현황(변경없음)

- 가. 지목별 현황 :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역으로 현재 지목이 부여되어 있지 않음.
- 나. 소유별 현황 : 공유수면매립 예정지역으로 현재 소유권 없음.

## 8.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68,661.0	-	68,661.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43,803.0	감523.4	43,279.6	63.8	
공	공 시 설 용 지	23,305.0	증670.7	23,975.7	34.9	
	도	11,150.0	증439.9	11,589.9	16.9	
	주 차 장	1,615.0	감650.3	964.7	1.4	
	공 원	1,475.0	증15.7	1,490.7	2.2	
	완 충 녹 지	70.0	증643.4	713.4	1.0	
	경 관 녹 지	8,995.0	증222.0	9,217.0	13.4	
기	타 시 설 용 지	1,553.0	감147.3	1,405.7	2.1	
	녹지	1,553.0	감147.3	1,405.7	2.1	

나. 기반시설계획

1) 도로

○ 총괄표

구분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1	793	11,150.0	-	-	-	-	-	-	1	793	11,150.0
변경	합계	1	793	11,589.9	-	-	-	-	-	-	1	793	11,589.9
기정	광로	-	-	-	-	-	-	-	-	-	-	-	-
변경	광로	-	-	-	-	-	-	-	-	-	-	-	-
기정	대로	-	-	-	-	-	-	-	-	-	-	-	-
변경	대로	-	-	-	-	-	-	-	-	-	-	-	-
기정	중로	1	793	11,150.0	-	-	-	-	-	-	1	793	11,150.0
변경	중로	1	793	11,589.9	-	-	-	-	-	-	1	793	11,589.9
기정	소로	-	-	-	-	-	-	-	-	-	-	-	-
변경	소로	-	-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4	14	집산 도로	793	사등동 86-8	향촌2 산업단지내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중로	3	24	14~15	집산 도로	793	사등동 86-8	향촌2 산업단지내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24	중로3-24	면적 변경: 11,150→11,589.9㎡	지적측량 결과 반영

## 2) 주차장

###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22	노외주차장	사등동 일원	1,615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22	노외주차장	사등동 일원	964.7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2	노외주차장	면적 변경 1,615 → 964.7㎡	지적 측량 결과 반영

## 3) 녹지

### ○ 녹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합계		9,065.0		
변경			합계		9,930.4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8,995.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2	녹지	경관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9,217.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기정	19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70.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19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713.4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2	경관녹지	면적변경 8,995 → 9,217.0㎡	지적 측량 결과 반영
19	완충녹지	면적변경 70 → 713.4㎡	지적 측량 결과 반영

4) 공원

○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	공원	소공원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475.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3	공원	소공원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490.7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3	소공원	면적변경 1,475→1,490.7㎡	· 지적측량 결과 반영

5) 상수도계획(변경없음)

○ 용수량

구 분	용수 수요량 (㎡/일)	비고
합 계	153	· 용강배수지에서 공급
생 활 용 수	21	
공 업 용 수	132	

6) 오수처리계획(변경없음)

○ 오수량

구 분	오수량(㎡/일)	비고
합 계	134	·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
공 업 오 수	119	
생 활 오 수	15	

# 사 천 시 공 보

제 732 호

## 7)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 ○ 전 력

구 분	전력사용량(MWh/년)	변압기 최대부하(kW)	비 고
합 계	3,020	818	한국전력공사 협의
산업시설용지	2,966	17	
기타시설용지	54	835	

### ○ 연료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직접열 연료수요량			간접열 연료수요량			비 고
	열수요량 (Gcal/년)	연료수요량(LNG)		열수요량 (Gcal/년)	연료수요량(LNG)		
		천Nm <sup>3</sup> /년	toe/년		천Nm <sup>3</sup> /년	toe/년	
산업시설용지	1,265	121	127	2,055	192	201	
합 계	1,265	121	127	2,055	192	201	

## 8) 통신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소요회선(회선)	비 고
여유율 20% 감안	23	(주)KT에서 신규 통신시설 공급
합 계	19	
산업시설용지	19	

## 9)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구 분	폐기물발생량(kg/일)	비 고
합 계	55,138	전량 위탁처리
사업장 배출폐기물	30,660	
사업장 지정폐기물	24,478	

## 9. 자원조달계획(변경없음)

### 가. 총사업비 (27,4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sup>주1)</sup>	기타비용 <sup>주2)</sup>
총사업비	27,400	23,600	1,100	1,200	1,500

주1) 감리비 : 공사비, 설계비의 6%

주2) 기타비용 : 공사비, 설계비, 감리비의 5%

# 사 천 시 공 보

제 732 호

나. 연차별 투자계획(변경없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16년까지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합 계		27,400	2,100	6,900	11,000	7,400	-
공 사 비		23,600	1,000	5,700	11,000	5,900	-
설 계 비	설계비	1,100	1,100	-	-	-	-
	감리비	1,200	-	1,200	-	-	-
기 타 비 용		1,500	-	-	-	1,500	-

**10.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그 밖의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 해당없음

**11. 에너지 사용계획:** 해당없음

**12.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도면번호	구 분	계획면적(m <sup>2</sup> )		비 율(%)
		기정	변경	
계		43,803.0	43,279.6	100.0
산업1-1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8,155.0	8,671.0	20.0
산업1-2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9,143.0	8,716.2	20.1
산업1-3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10,894.0	10,949.7	25.3
산업1-4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5,112.0	5,107.7	11.8
산업1-5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6,815.0	6,811.6	15.7
산업1-6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C31)	3,684.0	3,023.4	7.0

※ 입주예정기업 : 제일조선소, 삼선조선소, 에이치케이조선

**13.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 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면적 (m <sup>2</sup>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합 계	68,661.0	6,8661.0	100.0	-	
처분대상용지	소 계	43,803.0	4,3279.6	63.0	-
	산업시설용지	43,803.0	4,3279.6	63.0	실수요자 분양
지자체 무상귀속 시설용지	소 계	24,858.0	23,975.7	27.0	
	도 로	11,150.0	11,589.9	16.9	사천시 무상귀속
	주 차 장	1,615.0	964.7	1.4	〃
	공 원	1,475.0	1,490.7	2.2	〃
	완 충 녹 지	70.0	713.4	1.0	〃
	경 관 녹 지	8,995.0	9,217.0	13.4	〃
녹 지	1,553.0	1,405.7	2.1	〃	

# 사 천 시 공 보

제 732 호

15. 존치하려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해당없음

16. 토지·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 : 해당없음

17.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

I.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도시 지역	계	68,661	100	
	일반공업지역	68,516	99.8	당초 68,375㎡, 99.6%
	자연녹지지역	145	0.2	당초 286㎡, 0.4%

※ 구역계 변경으로 인한 면적 및 구성비 조정

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도로

○ 총괄표

구분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노선 수	연장 (m)	면적 (㎡)
기정	합계	1	793	11,150.0	-	-	-	-	-	-	1	793	11,150.0
변경	합계	1	793	11,589.9	-	-	-	-	-	-	1	793	11,589.9
기정	광로	-	-	-	-	-	-	-	-	-	-	-	-
변경	광로	-	-	-	-	-	-	-	-	-	-	-	-
기정	대로	-	-	-	-	-	-	-	-	-	-	-	-
변경	대로	-	-	-	-	-	-	-	-	-	-	-	-
기정	중로	1	793	11,150.0	-	-	-	-	-	-	1	793	11,150.0
변경	중로	1	793	11,589.9	-	-	-	-	-	-	1	793	11,589.9
기정	소로	-	-	-	-	-	-	-	-	-	-	-	-
변경	소로	-	-	-	-	-	-	-	-	-	-	-	-

○ 도로 결정조서(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24	14	집산 도로	793	사등동 86-8	향촌2 산업단지내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중로	3	24	14~15	집산 도로	793	사등동 86-8	향촌2 산업단지내	일반 도로	-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3-24	중로3-24	면적 변경: 11,150→11,589.9㎡	지적측량 결과 반영

2) 주차장

○ 주차장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22	노외주차장	사등동 일원	1,615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22	노외주차장	사등동 일원	964.7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22	노외주차장	면적 변경 1,615 → 964.7㎡	지적 측량 결과 반영

3) 녹지

○ 녹지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합계			9,065.0		
변경		합계			9,930.4		
기정	2	녹지	경관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8,995.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2	녹지	경관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9,217.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기정	19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70.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19	녹지	완충 녹지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713.4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녹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경관녹지	면적변경 8,995 → 9,217.0㎡	지적 측량 결과 반영
19	완충녹지	면적변경 70 → 713.4㎡	지적 측량 결과 반영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4) 공원

○ 공원 결정조서(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3	공원	소공원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475.0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변경	3	공원	소공원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1,490.7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 용	변경 사유
3	소공원	면적변경 1,475→1,490.7㎡	· 지적측량 결과 반영

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가.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변경	6	향촌2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천시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68,661	-	68,661	사천시 고시 제2016-159호 (16.07.28)	구역계 조정 (면적변경없음)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변경내용	변경 사유
변경	6	사천시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 구역계 조정	· 지적 측량 결과 반영

나.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사 천 시 공 보

제 732 호

## 2)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

구	분	면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증감	변경		
합	계	68,661.0	-	68,661.0	100.0	
산	업 시 설 용 지	43,803.0	감523.4	43,279.6	63.8	
공	공 시 설 용 지	23,305.0	증670.7	23,975.7	34.9	
	도	11,150.0	증439.9	11,589.9	16.9	
	로					
	주	1,615.0	감650.3	964.7	1.4	
	차					
	장	1,475.0	증15.7	1,490.7	2.2	
	공	70.0	증643.4	713.4	1.0	
	원	8,995.0	증222.0	9,217.0	13.4	
	완					
	충					
	녹					
	지					
기	타 시 설 용 지	1,553.0	감147.3	1,405.7	2.1	
	녹지	1,553.0	감147.3	1,405.7	2.1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 17 - I - 나 도시  
관리계획(시설) 결정조서 참조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당초	변경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43,803	43,279.6			43,803	43,279.6	
산업	산업1	43,803	43,279.6	1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8,155	8,671.0	
				2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9,143	8,716.2	
				3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10,894	10,949.7	
				4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5,112	5,107.7	
				5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6,815	6,811.6	
				6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3,684	3,023.4	

### ○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번호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계		1,615	964.7			1,615	964.7	
주	주1	1,615	964.7	-	사등동 산35 일원	1,615	964.7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5)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가) 산업시설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업	산업 1-1~ 산업 1-6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공장 부대시설에 한함)</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li> <li>「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배 치	• 건축배치지양구간에는 통경축 등의 확보를 위해 건축물 배치 지양(권고)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 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li> <li>-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li> </ul> </li> <li>보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li> <li>-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개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li> </ul> </li> <li>강조색 (제한없음)</li> </ul>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나) 주차장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	주1	용도	허용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노외주차장 및 그 부대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차전용건물일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고,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은 건축법 별표1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을 허용</li> </ul> </li> </ul>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2m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 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내용(변경)

가. 사업시행지의 위치 : 사천시 사등동 공유수면 일원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사업

2) 명 칭 :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다.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변경) : 당초 23,305㎡, 변경 23,975.7㎡

구 분		면적 또는 규모		비 고
도 로	중로 3-24호선	기정	L=793m, B=14m, A=11,150㎡	
		변경	L=793m, B=14~15m, A=11,589.9㎡	
주 차 장	주차장 22	기정	A=1,615㎡	
		변경	A=964.7㎡	
공 원	소공원 3	기정	A=1,475㎡	
		변경	A=1,490.7㎡	
녹 지	경관녹지 2	기정	A=8,995㎡	
		변경	A=9,217.0㎡	
	완충녹지 19	기정	A=70㎡	
		변경	A=713.4㎡	

라.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1) 성 명 : 사천시장

2) 주 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마.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1) 착 수 일 : 2016. 07. 28.

2) 준공예정일 ㄱ 당초 : 2021. 06. 30.

ㄴ 변경 : 2021. 12. 31.

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8호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와 동일함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 제1장 총 칙

#### 제1조(지침의 목적)

- 본 지구단위계획 지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 작성되는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 구역내 지구단위계획을 시행함에 있어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에 표시된 내용을 설명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내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및 건축물의 용도·규모·배치·형태와 공간활동 등에 관한 시행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침은 향촌2 일반산업단지계획구역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적용한다.

#### 제3조(용어의 정리)

- ①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2. “용적률”이라 함은 건축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상부 건축물 연면적(동일대지에 2개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대지면적에 대한 비율을 말한다.
  3. “허용용도”라 함은 그 필지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서는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4. “불허용도”라 함은 관련법규에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필지에는 허용되지 않은 건축용도를 말하며, 지정용도와 불허용도가 중복될 경우 불허용도가 우선적으로 적용 된다.
  5.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되어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6.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7.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이상,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8.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의 의장효과를 위하여 사용되는 색깔로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적 중 유리창 면적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깔을 말한다.
- ② 본 지침에서의 층수의 산정은 건축법상의 규정을 따른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③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 제2장 산업시설용지

### 제1조(건축물의 용도)

- 산업시설용지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예시)에 의한다.
- 예시

구분	규제내용
산업시설용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허용용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공장 부대시설에 한함)</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li> <li>•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li> </ul> </li> <li>·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 제2조(건축물의 밀도 및 높이)

① 도면표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용적률 이하	최고층수	250%이하	-
건폐율 이하	최저층수	60%이하	-

② 산업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이하, 용적률은 250%이하로 적용한다.

### 제3조(건축물의 색채)

① 건축물 외벽의 색채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뜻한 색 또는 무채색 계통의 밝은색 계통</li> <li>· 원색과 가까운 색 금지</li> <li>· 주변경관과 조화로운 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조색과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li> <li>· 주조색이 없고 보조색이 여러 가지 존재할 경우 같은 계통의 색으로 할 것</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한없음</li> </ul>

### 제4조(차량의 대지 내 진·출입)

- ① 경관녹지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된 곳에는 차량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다. 단, 비상용 차량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도로에서 각 대지의 주차장으로 직접 주차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도의 대지 내의 주차통로를 통해 주차하여야 한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③ 대지로의 차량 진·출입은 그 대지가 면하고 있는 도로의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5조(주차장)

○ 산업시설용지 내 주차장은 주차장법에 따른다.

## 제3장 기타 기반시설용지

### 제1조(주차장의 설치)

① 주차장 부지내에 주차전용 건축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법」 및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2조(소공원의 설치)

① 소공원의 공원시설은 전체부지의 20%이하로 설치토록 한다.

② 소공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3조(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설치)

①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건축물의 배치)

○ 기반시설용지 부지에 당해 용도를 위한 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는 인접한 대지에 있는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 제5조(기타 기반시설의 적용)

○ 기타 기반시설용지의 적용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 제4장 기타사항

### 제1조(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① 1개 공장에서 설치할 수 있는 간판의 수는 2개 이내로 제한한다.

② 기타 옥외광고물과 관련된 설치방법은 옥외광고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사천시 조례에 따른다.

### 제2조(기타)

① 옥상에 설치되는 물탱크 중 기성제품은 노출시켜서는 안된다.

## 제5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제1조(지구단위계획 지침의 적용범위)

- 본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 및 공공시설의 건축과 조성 행위에 적용된다.

제2조(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결정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변경절차를 따른다.
- ②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라야 하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 소하천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6.9.8>

## 소하천의 점용허가 공고

사천시 공고 제2021 - 828호

「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의 점용 허가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사 천 시 장 (직인)

시행자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사천시장(도시과)		
	대표자 (성 명)	사천시장	주소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77
소하천명		좌룡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사천시 송포동 1509-2번지		
	면적	6.4㎡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영구점용		
	목적 및 사유	도시계획시설(소로2-44호선)개설 L=266.6m, B=8.0m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 및 관련서류 1부(건설과 비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사천시 공고 제2021-830호

## 노대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 열람공고

건설부 고시 제1969-12호(1969.01.10.)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되고 사천시 고시 제 2020-241호(2020.07.02.)로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된 도시계획시설[공원: 남부 근린공원3(노대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노대근린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입안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16조2 규정에 의거 주민의견을 듣고자 열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4일

사 천 시 장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붙임
2.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3. 열람장소 : 사천시청 녹지공원과 또는 도시과
4. 관계도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도서(열람장소 비치)
5. 관계도면 : 게재생략
6. 기타 상세한 사항은 사천시청 녹지공원과(☎055-831-3415) 또는 도시과(☎055-831-317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붙임)

## 1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 가.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3	노대공원	근린공원	사천시 노룡동 산5-3번지 일원	77,157	-	77,157	1969.01.10. (제1969-12호)	조성 계획 변경

###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노대공원	• 공원조성계획 변경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실효고시[사천시 고시 제2020-257호(2020.7.16.)]에 따른 공원면적 축소에 대한 조성계획 변경

### 나. 공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조서

#### ■ 총괄표(변경)

시설의 구분	시설면적 (㎡)			구성비 (%)		건축면적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원면적	151,840	감)74,683	77,157	100	100	864	감)699.98	164.02	864	감)703.98	160.02	
시설면적	31,003	감)11,115	19,888	20.4	25.8	864	감)699.98	164.02	864	감)703.98	160.02	변경
도로및광장	4,181	감)1,749	2,432	2.8	3.2	-	-	-	-	-	-	변경
조경시설	4,177	감)165	4,012	2.8	5.2	-	-	-	-	-	-	변경
휴양시설	5,596	감)155	5,441	3.7	7.0	-	-	-	-	-	-	변경
교양시설	8,217	감)7,462	755	5.4	1.0	784	감)784	-	784	감)784	-	변경
편익시설	8,832	감)1,584	7,248	5.8	9.4	80	증)84.02	164.02	80	증)80.02	160.02	변경
녹지및기타	120,837	감)63,568	57,269	79.6	74.2	-	-	-	-	-	-	변경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 ■ 세부시설 조서 결정(변경)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공 원 면 적				151,840	감)74,683	77,157	864	감)699.98	164.02	864	감)703.98	160.02	
시 설 면 적				31,003	감)11,115	19,888	864	감)699.98	164.02	864	감)703.98	160.02	시설율: 25.8%
도로 및 광장				4,181	감)1,749	2,432	-	-	-	-	-	-	
기정	1	도로		4,181	감)1,963	2,218	-	-	-	-	-	-	
변경	-												
신설	1-1	광장1		-	증)214	214	-	-	-	-	-	-	
조경시설				4,177	감)165	4,012	-	-	-	-	-	-	
변경	2-1	하늘정원	노룡동 산5-3	3,326	감)165	3,161	-	-	-	-	-	-	
	2-2	조경녹지1	노룡동 488-1	149	-	149	-	-	-	-	-	-	
	2-3	조경녹지2	노룡동 488-1	199	-	199	-	-	-	-	-	-	
	2-4	조경녹지3	노룡동 산8-1	166	-	166	-	-	-	-	-	-	
	2-5	조경녹지4	노룡동 291-1	261	-	261	-	-	-	-	-	-	
	2-6	조경녹지5	노룡동 산8-1	76	-	76	-	-	-	-	-	-	
휴양시설				5,596	감)155	5,441	-	-	-	-	-	-	
변경	3-1	잔디광장	노룡동 산15-3	5,076	감)155	4,921	-	-	-	-	-	-	
	3-2	휴게쉼터	노룡동 산44-1	520	-	520	-	-	-	-	-	-	
교양시설				8,217	감)7,462	755	784	감)784	-	784	감)784	-	
변경	4-1	만남의광장	신백동 570	755	-	755	272	감)272	-	272	감)272	-	
폐지	4-2	바람광장	노룡동 산5-1	4,492	감)4,492	-	-	-	-	-	-	-	
폐지	4-3	온실식물원	노룡동 215-1	2,434	감)2,434	-	512	감)512	-	512	감)512	-	
폐지	4-4	야외학습장	신백동 산39-4	536	감)536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 732 호

구분	번호	시설명	위치	시설면적 (㎡)			건축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편의시설				8,832	감)1,584	7,248	80	증)84.02	164.02	80	감)80.02	160.02	
폐지	5-1	전망정자	노룡동 536-3	200	감)200	-	-	-	-	-	-	-	
폐지	5-2	전망데크	신벽동 산42-8	100	감)100	-	-	-	-	-	-	-	
기정 변경	5-3 5-1	데크계단1	신벽동 산42-9	722	감)439	283	-	-	-	-	-	-	
폐지	5-4	데크계단2	노룡동 산15-2	202	감)202	-	-	-	-	-	-	-	
폐지	5-5	데크계단3	노룡동 536-3	120	감)120	-	-	-	-	-	-	-	
신설	5-2	데크계단2	신벽동 산42-9	-	증)115	115	-	-	-	-	-	-	
폐지	5-6	화장실	노룡동 429	80	감)80	-	80	감)80	-	80	감)80	-	
기정 변경	5-7 5-3	주차장1	노룡동 산8-1	6,198	-	6,198	-	-	-	-	-	-	
기정 변경	5-8 5-4	주차장2	노룡동 산6-1	370	-	370	-	-	-	-	-	-	
폐지	5-9	주차장3	노룡동 429	840	감)840	-	-	-	-	-	-	-	
신설	5-5	화장실	신벽동 570	-	증)156	156	-	증)92.02	92.02	-	증)92.02	92.02	1층
신설	5-6	휴게음식점	신벽동 570	-	증)126	126	-	증)72	72	-	증)68	68	1층, 소매점 포함
녹지 및 기타				120,837	감)63,568	57,269	-	-	-	-	-	-	
변경	6-1	녹지 1		14,956	감)11,200	3,736	-	-	-	-	-	-	
	6-2	녹지 2		11,756	-	11,756	-	-	-	-	-	-	
변경	6-3	녹지 3		36,902	감)34,107	2,795	-	-	-	-	-	-	
변경	6-4	녹지 4		1,479	증)4,125	5,604	-	-	-	-	-	-	
변경	6-5	녹지 5		882	감)322	560							
변경	6-6	녹지 6		9,205	감)236	8,969							
	6-7	녹지 7		1,051	-	1,051							
변경	6-8	녹지8		6,255	감)282	5,973							
변경	6-9	녹지9		21,881	감)7,229	14,652							
변경	6-10	녹지10		5,058	감)2,885	2,173							
폐지	6-11	녹지 11		3,420	감)3,420	-							
폐지	6-12	녹지 12		7,992	감)7,992	-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 다. 세부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연장 (m)	면적 (㎡)	기능	시점	종점	비고
기정		합계		2~4	1,561	4,181				
변경		합계		2~4	762	2,218				
기정	소로	3	1	4	171	725	진입로	3번국도	마을진입로	
변경	소로	3	1	4	150	641	진입로	3번국도	마을진입로	
	소로	3	2	4	81	324	진입로	3번국도	주차장2	
기정	소로	3	3	3	154	462	산책로	주차장2	온실식물원	
변경	소로	3	3	3	101	333	산책로	주차장2	하늘정원	
기정	소로	3	4	3	130	390	산책로	소로 3-5	야외학습장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5	3	150	450	산책로	바람광장	온실식물원	
폐지	-	-	-	-	-	-	-	-	-	
	소로	3	6	3	80	240	산책로	노레소류지	하늘정원	
	소로	3	7	2	45	90	산책로	북측입구	소로3-10	
기정	소로	3	8	2	305	610	산책로	소로 3-9	잔디광장	
변경	소로	3	8	2	295	590	산책로	소로3-7	잔디광장	
기정	소로	3	9	2	290	580	산책로	소로 3-10	소로3-13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10	2	35	70	산책로	데크계단2	소로3-11	
폐지	-	-	-	-	-	-	-	-	-	
기정	소로	3	11	2	120	240	산책로	데크계단2	정망정자	
폐지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사천시 공고 제2021 -818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사천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24일

사 천 시 장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에 근거한 내용과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전부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우대인증 기재사항을 일부 변경(안 별표 3)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추가 (안 별지 제1호서식)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 정비

###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7월 1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사천시장(참조 : 혁신법무담당관)에게 제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우리 시를 직접 방문하거나, 사천시청 홈페이지([www.sacheon.go.kr](http://www.sacheon.go.kr)의 정보공개/민원>행정정보 공개>법무행정 종합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4. 보내실 곳 : 사천시청(참조 : 혁신법무담당관)

(우편번호 : 52539, 주소 :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전화 : 831-2195, FAX : 831-6015)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사천시 조례 제 호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에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험 기관과 보험”을 “보험기관과 보험 계약”으로,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을”을 “보험료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다목 중 “나항”을 “나목”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신청일로부터 10일”을 “신청일부터 10일”로, “신청일로부터 20일”을 “신청일부터 20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험기관”을 “시장”으로, “공모하여”를 “공모하여 보험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낙일로”를 “승낙일”로 한다.

제9조 중 “읍·면·동장은”을 “인구증가시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u>정의</u>는 다음과 같다.</p> <p>1. “인구증가시책”이란 <u>시에서</u>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p> <p>2. (생 략)</p> <p>3. “출생아 복지보험료”란 출생아 건강과 관련하여 시와 협약한 <u>보험 기관과 보험을 체결하고 납부하는 보험료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u></p> <p>4.·5.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3조(지원대상) 인구증가시책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u>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이나 물품이 있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u></p> <p>1. 출산지원금: 출생아 출생 신</p>	<p>제2조(정의) ----- ----- <u>뜻은</u> -----.</p> <p>1. ----- <u>사천시</u> <u>(이하 “시”라 한다)에서</u>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 <u>보험기관과 보험 계약</u>--- ----- <u>보험료를</u> -- -----.</p> <p>4.·5. (현행과 같음)</p> <p>6. “<u>보험기관</u>”이란 <u>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보험사</u>를 말한다.</p> <p>제3조(지원대상) ----- ----- ----- . <u>다만</u>----- ----- ----- ----- ----- -----.</p> <p>1. -----</p>

고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  
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  
고 거주하고 있는 세대로서  
자녀를 출산하고 시 관내에  
출생아의 주민등록을 둔 경우  
가.·나. (생 략)

다. 지원신청일 이후에 한 입  
양, 보호자 재혼 등은 나항  
에 따른 자녀의 순서 산정  
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 삭 제

3. ~ 7. (생 략)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 3. (생 략)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  
③ (생 략)

④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  
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  
을 결정하고, 출생아 복지보험  
료의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10  
일 이내에 보험기관에 통보하  
고, 출산지원금의 경우에는 신  
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

-----  
-----  
-----  
-----  
-----

가.·나. (현행과 같음)

다. -----  
----- 나목  
-----  
-----.

3. ~ 7.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내용)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  
-----.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신청 및 지원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신청일로부터 10일  
----- 신  
청일로부터 20일 -----

의 계좌로 지급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기관의 선정) ① 보험  
기관은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  
사업에 적합한 보험사를 공모하  
여 선정한다.

② 출생아 복지보험은 시와 보  
험기관과의 계약으로 이루어지  
며, 수익자는 피보험자의 보호  
자로 하며, 보험계약은 보호자  
가 보험기관의 청약서에 서명한  
후 보험기관의 보험 승낙일로부  
터 이루어진다.

제9조(대장 비치) 읍·면·동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  
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을,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  
리하여야 한다.

-----  
-----.

제8조(보험기관의 선정) ① 시장-  
-----  
----- 공모하  
여 보험기관으로 -----.

② -----  
-----  
-----  
-----  
----- 승낙일-----  
-----.

제9조(대장 비치) 인구증가시책 -  
-----  
--- 읍·면·동장은 별지 제4  
호서식-----  
-----  
-----.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별표 3]

## 우대인증(제3조제6호 관련)

### 우 대 인 증

성 명:

(가족 성명: )

생년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사 천 시

(가로 8.5cm × 세로 5.5cm)

(뒷면)

- 사천시 실내수영장 **이용료** 할인(일반인 이용료 기준 50퍼센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할인(50퍼센트)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주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 항공우주박물관 무료 관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무료 관람
- ※ 우대인증 가족 성명에 기재된 사람만 사용 가능
- ※ 신분증과 함께 제시
- ※ 중복할인 불가



<b>신청인 제출서류</b>	1.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2. 신청인(대리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3. 가족관계증명서(대리신청 또는 출생신고 완료 후 추후에 신청할 경우에 해당) 4. 조제분유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빙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조제분유 업무 담당자에게 별도 제출 필요)
<b>담당공무원 확인사항</b>	주민등록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농업경영체증명, 장애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그 밖에 관련 법령(지침, 조례, 규칙 등)에서 제출서류로 정한 것
<b>참고사항</b>	1. 신청하는 곳 : 출생자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다만, 해산급여는 출산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2. 신청인(대리 신청인 포함)의 범위 : 출산자 본인, 출산자의 배우자, 출산자의 친부모 및 시부모

**유의 사항,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활용·제공 동의서**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54조제4항4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9조, 「아동수당법」 제24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54조 등에 따른 징역,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 해산급여(출산에 따른 해산급여 지급에 한함 ※ 사산에 따른 해산급여는 별도 신청)는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과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 출산 가구 전기료 경감과 다자녀 전기료 경감은 중복으로 지원되지 않으므로, 셋째 자녀의 경우 다자녀 전기료 경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아래의 민감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는 데 동의합니다. ※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이 장애인 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항목	이용 목적	보유기간
해산급여 대상여부	저소득층해산급여 대상자 자격 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장애인 여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대상자 자격확인	대상자격 조회 시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건복지부 및 사회보장정보원, 해당카드사에 아래의 내용과 같이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9조, 제2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 조사 등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 지원제공 계약 및 본인확인 업무, 이용권 적정급여 관리업무, 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상담전화(TM)), 이용권 제작 및 배송을 위한 정보 제공
  - 이용권의 생성 및 본인부담금 청구 등 업무, 이용권 결제를 위한 인증번호 또는 결제내역 송수신(SMS), 기저귀 및 조제분유 결제 내역 확인 및 우편물·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송을 위한 정보 제공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시장군수구청장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서 다자녀 가구 또는 출산가구에 제공하는 각종 경감서비스 등의 신청을 대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상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보유기간 : 3년, 제공항목 :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고객센터, 그 밖에 필요한 정보 등, 기타 상세내용은 개별기관 홈페이지 참조)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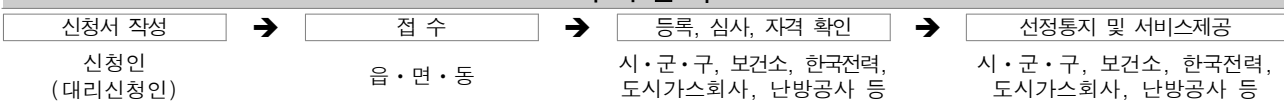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전기료, 지역난방비, 도시가스료는 이사 등으로 주민등록주소지 변경 시 반드시 관할 한국전력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사업자 등에 연락하여 이전 주소지 적용 건을 해지한 후 새로운 주소지로 재신청하여야 계속 경감 적용이 됩니다. ※ 지역난방은 공급자별로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연 1회 경감요금을 정산하여 환급함
- 양육수당·아동수당 신청 시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계좌주가 아동 또는 아동의 부·모가 아닌 경우, 아동의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아동 및 보육 담당공무원과 상담한 후 별도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을 위해 작성·제출하신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본인(대리인 포함)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으며 위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대리 신청인) : \_\_\_\_\_ (서명 또는 인)

**처리 절차**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 관 련 법 규

###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④ 제2항제4호 각 목 중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행위는 법령·조례에 따라 표창·포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 □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9조(서비스 대상 및 통합처리 서식) ①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임신서비스 대상은 별표1에 따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임신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로 신청할 수 있는 출산서비스 대상은 별표2에 따르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시행하는 출산서비스 대상을 이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체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 사 천 시 공 보

제732호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서 정한 서비스 대상 전체가 기재된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체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3조, 「임신·출산 진료비 등의 의료급여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에너지법」시행규칙 제3조의2,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2조에 의한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의료급여수급자 임신·출산 진료비지원, 에너지이용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

⑥ 「사회보장급여 관련 공통서식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제5조 및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제2조에 의한 양육수당, 아동수당, 전기료·도시가스료·지역난방비 경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해산급여 신청 등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사용할 수 있다.